

세부보고서 ①
(2023)



• 구금시설



• 식량배급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 취약계층

이규창



• 건강권

KINU 통일연구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I. 서론	7
II.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실태	13
1. 공개재판	15
2. 공개처형	17
가. 공개처형 지역	17
나. 공개처형 사유	17
다. 김정은의 관대함 부각 기회로 활용	21
라. 비밀처형으로의 전환	21
3. 정치범수용소	22
가. 수용 절차	22
나. 운영 현황	23
다. 수용 사유	25
라. 수용 사례	28
마. 수용자 인권 실상	28
III.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실태	31
1. 북한 구금시설 종류	33
가. 집결소	33
나. 구류장	33
다. 노동단련대와 노동교양대	34
라. 노동교화소	36

2. 고문 및 가혹행위	38
3. 강제노동	39
4.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상황과 사망자 발생	40
5. 강제송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제낙태	41
6. 인권유린 금지 방침 하달 및 실태 변화 증언	42

IV. 코로나19 이후 통제 강화에 따른 인권침해 47

1.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50
2. 사상·정보·문화통제 강화	53
3.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 강화	58
4.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와 처벌 강화	59

V. 결론 63



표목차

〈표 II-1〉 공개처형 관련 증언	19
〈표 II-2〉 북한 정치범수용소 운영 및 관리	24
〈표 III-1〉 김정은 집권 이후 하달된 인권유린 금지 방침	44
〈표 IV-1〉 북한의 비상방역 등급	50
〈표 IV-2〉 북한 비상방역법의 사형 조문	52
〈표 IV-3〉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의 사형 규정	54
〈표 IV-4〉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 10대 원칙 핵심 내용	57
〈표 IV-5〉 북한 형법의 마약범죄 규정 비교	60



그림목차

〈그림 I-1〉 인권 침해 북한 개인·기관 제재	11
〈그림 II-1〉 공개처형 사유	20
〈그림 II-2〉 청진 25호 관리소 위성사진 모습(2021)	25
〈그림 II-3〉 북중 간 국경경비 강화	27
〈그림 II-4〉 북한 주민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말살	30
〈그림 III-1〉 원산교화소 시설 변화 모습	37
〈그림 III-2〉 평안북도 피현군 선화동교화소 시설 변화 모습	37
〈그림 IV-1〉 ‘비상방역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할데 대하여’ 학습자료 표지 사진	51
〈그림 IV-2〉 방역규정 절대준수를 강조하는 북한 포스터	52
〈그림 IV-3〉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독려하는 김정은 지시 ..	55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I

서론



I. 서론

북한의 인권침해는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이 발생하고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상소권 등의 사법(司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재판 없이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다.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기관들도 인권 보호보다는 체제 보위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 검찰소는 기관·기업소·단체와 주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는 것과 범위반자 적발 및 책임 추궁을 통해 북한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56조). 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호를 임무로 하고 있다(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62조). 또한 북한 주민들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노동교화소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소에 대해 인권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7일 자산동결 조치를 규정한「글로벌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하였다.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는 심각한 인권 침해¹⁾를 저지른 기관·개인에게 여행 금지, 자산동결, 기금 모금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²⁾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유럽연합은 2021년 3월

1)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고문 및 가혹행위, 노예화, 초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등 5개 행위이다.

2)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The EU has a new powerful tool to protect human rights: the EU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 <https://www.eeas.europa.eu/eeas/eu-has-new-powerful-tool-protect-human-rights-eu-global-human-rights-sanctions-regime-0_en> (Accessed February 1, 2023).

22일 중국, 북한, 러시아, 리비아, 남수단, 에리트리아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택(국가보위상), 리영길(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³⁾ 유럽연합은 북한 관리 및 기관에 대한 인권제재를 2023년 12월 8일까지 연장하였다.⁴⁾ 영국은 2018년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과 2020년 「글로벌 인권제재 규칙 2020(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을 제정하였다. 영국은 이 법령들을 근거로 2020년 7월 6일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등 4개국(개인 47명, 2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유린과 관련하여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교화국과 국가보위성 7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⁵⁾ 미국은 2016년 제정된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과 2016년 3월 16일 발동된 대통령령 「행정명령 13722(Executive Order 137222)」를 근거로 북한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⁶⁾ 이 법령들에 따라 미국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을 비롯하여 개인 32명과 기관 13곳에 미국 입국 금지,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등의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⁷⁾

3) Council of the EU, "EU imposes further sanctions over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22 March 20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1/03/22/eu-imposes-further-sanctions-over-serious-violations-of-human-rights-around-the-world/>> (Accessed February 1, 2023).

4) Council of the EU, "Human Rights violations: EU restrictive measures prolonged for a further year," 5 December 202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2/05/human-rights-violations-eu-restrictive-measures-prolonged-for-a-further-year/>> (Accessed February 24, 2023).

5) Government of UK, "UK announces first sanctions under new global human rights regime," July 6, 2020.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announces-first-sanctions-under-new-global-human-rights-regime>> (Accessed February 24, 2023).

6) 통일부 북한인권포털, "현황→국제사회의 노력→유엔 등의 노력→대북인권제재," <<https://unikorea.go.kr/nkhr/current/international/sanctions/un/>> (검색일: 2023.2.1.).

7) "미국, 김정은 인권 제재 5주년... "인권 개선 압박 효과적", 『VOA』, 2021.7.6.

〈그림 1-1〉 인권 침해 북한 개인·기관 제재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롭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정치범수용소는 더 거슬러 올라가 김일성 시대부터 존재하여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집권 이후 실태가 변화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변화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통일연구원이 수행한 북한이탈 주민 대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국내외 기관의 발표 자료도 함께 살펴본다. 제2장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로 공개재판,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노동교화소 등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 당국이 사회통제를 강화하면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

II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실태



II.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실태

1. 공개재판

북한은 흔히 인민재판이라고 불리는 공개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개재판제도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조직되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대표와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2조). 공개재판제도는 현지에서 재판을 조직한다는 점에서 재판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공개재판제도는 순수한 재판제도라기보다는 범죄를 폭로규탄하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공포를 조장하는 주민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어떤 범죄에 대해 공개재판이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정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인 교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⁸⁾ 최근에는 병두, 아편과 같은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공개재판이 시행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을 비롯한 불순녹화물에 대한 공개재판도 다수 목격되었다. 이 밖에 비법월경, 살인, 인신매매, 중국 또는 한국과 전화하다 검거된 사람, 미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개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침 사건(김정은이 방침을 내린 중대사건) 위주로 공개재판이 진행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공개재판은 군대에서도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2년 ○○여단 소대장이 병사를 때렸는데 그 병사가 사망하여 공개재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군 판사와 검사

8)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p. 30.

들이 와서 군사재판을 했는데 여단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 공개재판 형식으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공개재판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의 참석 여부에 대해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공개재판에 참석 하더라도 별다른 역할은 하지 않는다. 2014년 양강도 삼지연시 포태구 문화회관 앞에서 비법월경 죄목으로 공개재판을 받은 북한 주민은 공개 재판을 받기 전 보위부 구류장에서 20일간 죽도록 매를 맞은 뒤 예심도 받지 않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 없이 공개재판을 받았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공개재판에 검사와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참석하며, 변호사는 피고인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방어하지도 못한다.

공개재판이 모두 공개처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개 재판 결과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은 총살되기도 한다. 2018년 1월에 함경북도 온성군 군당 책임비서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 공개재판을 받은 직후에 공개처형 당했다는 증언이 있다. 한편, 2019년 양강도 김정숙 군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옛날에는 공개재판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특정 지역에 한정된 현상인지 아니면 북한 지역의 전반적인 현상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많은 군중이 참여하는 공개재판이 일시적으로 감소 하거나 중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공개재판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살펴본다.

2. 공개처형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갖는다(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 생명권은 최고의 권리이자 모든 인권의 기본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생명의 박탈은 법률로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당사국의 국내법으로 합법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자유권규약 제14조)에 따라 초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은 금지된다. 북한의 공개처형은 사회일탈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경각심과 공포심을 통한 사회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가. 공개처형 지역

혜산, 함흥, 청진 등의 국경지역 도시에서 공개처형 빈도가 높게 발생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출신 지역이 국경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출신 지역은 함경북도와 양강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 평양에서도 공개처형이 발생하였는데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3~2015년에 집중되었다. 집권 이후 권력 공고화 및 공포통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사회 외에 구금시설에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 2016년 4월 교화소 도주 기도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으며, 참관을 하지 않는 수감자들은 출소일을 늦추겠다고 위협하여 강제 참관하였다고 한다.

나. 공개처형 사유

(1) 김정은 지시·노동당 정책 위반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지침(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김정은 지시)은 노동당규약과 헌법보다 우월적 효력을 갖는 초법적 규범으로서의 위

상을 갖는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간부들의 부정행위 및 정책 실패, 김정은의 지시나 노동당 정책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초급당 비서, 관리위원장 등 하급 단위 간부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 2014년 군대 내에서 구타하지 말라는 김정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단참모장 등 4명이 출당 및 직위해제 후 공개처형되었다. 2015년에는 평양에서 대동강 자라공장 지배인과 당비서 처형이 반당적 행위, 수령 유훈교시 말살, 부정부패를 이유로 공개처형되었다. 장성택 관련자에 대한 공개처형도 목격되었다.

(2) 종교활동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제68조에서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북한은 종교활동을 반국가범죄로 간주하여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황해북도 길성포에서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이, 반체제 삐라 살포 유통을 이유로 여성 1명이 공개재판을 받은 후 처형되었다.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는 성경소지를 이유로 2명이 공개처형되는 것이 목격되었다.

(3) 국가재산 절도·밀수

국가재산 및 당국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한 절도 및 밀수 관련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 특수강을 중국에 밀무역하다가 처형된 사례와 배급으로 나가야 하는 식량을 빼돌려 처형된 사례가 있었다. 평양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와 같은 패거리가 지하철에서 호위국 후방일군의 물건을 훔쳤는데 여기에 국가기밀문건(호위국관리 초대소 물자명세)이 있어서 처형된 사례도 있었다.

(4) 강력범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공개처형하는 경우가 목격되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양강도 혜산시 아동납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례적으로 김정은 방침까지 하달되었으며 범인은 공개처형되었다. 2014년부터 2015년경에는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포주 역할을 했던 여성에 대해 처형이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장생이라는 군부대 마을에서 살인죄로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 중앙재판소에서 내려와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행위(미성년자 성폭행)를 밝히고, 법조항 몇 항에 의해 총살형에 처한다고 공개재판을 한 뒤 형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2018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는 군당 책임비서 아들 살해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북한은 이 사건을 당 일군가족이 살해된 특대형 사건으로 간주하여 군중을 총살 현장에 동원하였다. 2018년 1월 31일 공개처형 현장을 목격한 북한이탈주민은 1주일 이상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한다.

〈표 II-1〉 공개처형 관련 증언⁹⁾

혜산시에서 2023년 1월 29일날 여자 두 명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사건은 2021년 10월 보위지도원 색시를 그 여자 두 명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보위지도원 색시는 장마당에서 돈데꼬(돈장사)를 하였고 그를 죽인 여자 두 명은 죽은 사람의 친척이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일을 가지고 공개총살을 하였는데 원래는 5,000명 규모로 진행하려고 한 것을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1,500명 규모로 했습니다.

(5) 녹화물 시청과 마약·성매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와 정보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녹화물 시청을 사유로 하는 공개처형이 발생하고 있다. 마약 관련 공개처형 사례도 꾸준히 수집되고 있다.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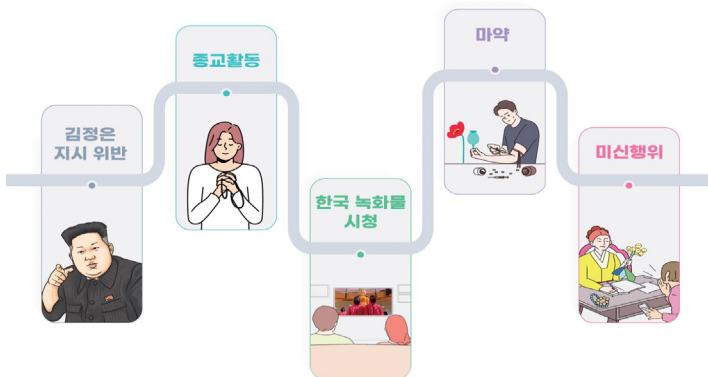
9) 북한이탈주민 증언, 2023.2.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 죄목으로 1명이 총살되었으며, 2014년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에서는 남성 2명이 한국 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의 이유로 총살되었다. 2014년 10월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 비행장에서 남성 3명이 한국 녹화물 유포행위로 총살되었고, 2015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30~40대 남성 5명이 한국 녹화물 시청과 마약 거래 혐의로 공개재판 후 총살되었다. 2017년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 비행장에서 남성 1명이 한국 녹화물 유포행위로 총살되었고, 2017년 2월 황해북도 벽성군에서 20여 명이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와 마약 거래를 이유로 총살되었다.

(6) 미신행위

미신행위를 이유로 하는 공개처형도 실시되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한다.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이와 유사하게 2018~2019년에 미신행위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2019년에도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한다.

〈그림 II-1〉 공개처형 사유



다. 김정은의 관대함 부각 기회로 활용

북한은 김정은의 관대함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공개처형을 활용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3년에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주동자는 처형하는 반면에 사건 연루자들에게는 갱생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013년 불순녹화물 처벌과 관련하여 “김정은 원수께서 당신들의 죄를 0(zero)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들을 무죄로 선포한다”는 방침을 낭독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13년 다른 사건에서는 성매매 관련 사건의 주동자를 처형하고 나머지는 감형 및 석방하였다고 한다.

라. 비밀처형으로의 전환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감소하였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그 시기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은 2008년 이후 공개처형이 사라졌다고 한다.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2008년 이후 공개처형이 사라졌다고 증언하였다.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2~2013년 공개총살을 목격한 이후 공개처형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2016년 마지막으로 공개처형을 봤고, 2018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유엔이 공개처형 문제를 세계 비판하여 공개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증언만으로 공개처형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공개처형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도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022년 10월에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다 단속된 2명의 10

대 학생과 계모를 살해한 학생 1명이 공개처형되었다고 보도하였다.¹⁰⁾ 또한 데일리NK는 2022년 9월 말 강원도 원산시에서 50대 남성이 불법 의약품 제조를 이유로 공개처형되었다고 보도하였다.¹¹⁾ 공개처형이 비밀처형 또는 비공개처형으로 전환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적 범죄(말 반동, 한국 관련 간첩활동, 수령 비판 등)에 대해서는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을 실시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경 탈북 브로커를 하던 동네 아주머니가 비공개총살되었다고 증언하였다.

3. 정치범수용소

북한 당국은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정치범수용소를 체제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활용해왔는데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인권침해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수용자들은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가. 수용 절차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 평등하며,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재판소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 그러나 북한은 재판절차 없이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상소권 등 사법적 권리의 보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범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

10) “한국영화 유통 북한 고3 두명 공개처형,” 『자유아시아방송』, 2022.12.2.

11) “북한서 여전히 ‘공개처형’ 이뤄져...공포감에 떠는 주민들,” 『데일리NK』, 2022.11.7.

범수용소 수용은 재판을 하지 않고 국가보위성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며, 국가보위성이 정치범수용소에 보낼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사회안전성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경 모녀가 한국행을 기도하다 붙잡히자 할머니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사례가 있다. 다만, 예전에는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수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한국행이 많아지면서 일일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이 수용되는 경우 아이들은 제외된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당시 8세로 추정) 고아들을 키우는 숙박소에 들어갔다고 한다. 배우자가 정치범으로 몰렸을 때 이혼하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운영 현황

통일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 심층조사와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근거로 2013년 기준 5개 관리소에 8만~12만 명 정도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¹²⁾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마을형태와 교화소형태, 완전통제구역만 있어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관리소와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이 함께 있어 사회복귀가 가능한 관리소, 수용자 혼자만이 거주하는 관리소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관리소, 국가보위성이 관리주체인 관리소와 사회안전성이 관리주체인 관리소로 구분할 수 있다.

12)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20~21.

〈표 II-2〉 북한 정치범수용소 운영 및 관리¹³⁾

	개천 14호	요덕 15호	명간 16호	개천 18호	청진 25호
형태	마을	마을	마을	마을	교화소
사회복귀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족동반 여부	가족	본인·가족	가족	본인·가족	본인
관리주체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이후 정치범수용소 운영에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016년 청진 25호 관리소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3년에 비해 시설 규모가 2배 이상 증설되었다고 발표하였다.¹⁴⁾ 〈그림 II-2〉는 북한인권위원회가 2021년 위성으로 촬영한 청진 25호 관리소의 모습이다. 한국의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와 경제난에 따른 민심 동요 및 사상 이완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에 정치범수용소 수용 능력을 늘렸다고 보도하였다.¹⁵⁾ 또한 이 매체는 2022년 12월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요덕 15호 관리소가 구역별 해체와 보수 공사를 통해 시설을 정비하였다고 보도하였다.¹⁶⁾

13) 위의 책, p. 17.

14) Joseph S. Bermudez Jr., Andy Dinville, and Mike Eley, "North Korea Camp No. 25 – Update 2,"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November 29, 2016, <https://www.hrnk.org/uploads/pdfs/ASA_HRNK_Camp25_Update2.pdf>. Accessed February 7, 2023.

15) "교화소·정치범수용소 시설 및 관리 인력 확충...공포정치 강화," 『데일리NK』, 2021.11.26.

16) "북한, 요덕 수용소 시설 및 체계 정비...新 수감자 총원 목적," 『데일리NK』, 2022.12.23.

〈그림 II-2〉 청진 25호 관리소 위성사진 모습(2021)¹⁷⁾

다. 수용 사유

(1) 북한체제 반대·최고지도자 모독

북한체제를 반대하거나 최고지도자를 모독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말 반동’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항상 언사를 신중히 했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고 증언하였으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말하는 것을 왜곡하거나 김정은 방침을 왜곡적으로 집행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고 증언하였다.

(2) 한국에서 돈을 받거나 한국으로 전화하는 행위

한국에서 돈을 받거나 한국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발각된 경우 관리소에

17)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Amanda Mortwedt Oh, and Rosa Park-Tokola,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No. 25, Update 3,"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HRNC), September 30, 2021, <https://www.hrnk.org/uploads/pdfs/Bermudez_KLS25_FINAL.pdf> Accessed February 7, 2023. (사진=HRNK)

수용되기도 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양강도에서 33살 여성이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여성의 남편은 ○○총국 초기복무 중이었는데, 부인이 관리소에 가게 되면서 제대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3) 조직적 인신매매

인신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교화소에 가게 되지만, 조직적 인신매매의 경우이거나 한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에 같은 여맹에 있던 한 여성이 70명을 인신매매로 넘기다가 적발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5~2016년경 국경지역에 사는 동창생이 인신매매로 사람을 중국에 넘기는 일을 하다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2016년경 양강도 김정숙군 인민반장이 인신매매 과정에서 한국에서 보내준 돈을 받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증언한 사례도 있다.

(4) 한국행 시도

한국행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으로 가다가 잡히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된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한국행을 기도하다 잡히면 재판 없이 보위성에서 바로 정치범수용소로 간다고 증언하였다.

〈그림 II-3〉 북중 간 국경경비 강화¹⁸⁾

(5) 북한 주민의 한국행 알선

북한 주민의 한국행을 알선하던 탈북 브로커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는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브로커였던 고모부가 2015년에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 2017년 탈북한 한 50대 여성은 탈북 브로커였던 동생이 2016년에 보위부에 체포된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증언하였다.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에 탈북 브로커였던 이웃 주민이 한국으로 탈북한 부모의 부탁으로 북한에 남아 있던 그들의 아이를 중국 브로커에게 넘겨준 일이 발각되어 보위성에 잡혀갔고,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6) 종교활동

종교활동도 수용 사유 가운데 하나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4월 중국에서 성경책을 받아 북한에서 사람들에게 배포 및 선교하다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에 들어간 친척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18) 강동완,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서울: 너나드리, 2020), p. 292, p. 345,

(7) 기타 사유

이 외에도 한국과의 통화, 한국 영화 시청, 마약, 인신매매도 수용 사유로 파악되고 있다. 2015~2016년경 지인이 정치범수용소에 갔다는 북한 이탈주민은 수용 사유가 한국에 있는 친척과의 전화, 한국 영화 시청, 마약, 인신매매 등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라. 수용 사례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에 양강도 보천군 거주 하던 20대 남성이 가족의 한국행을 도와준 죄목으로 함경북도 명간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고 이후 도주하다 체포되어 사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에 양강도 혜산에 거주 하던 40대 남성과 가족 5명(어머니, 당사자, 아내, 두 아이)이 검은 돈(한국 돈)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어 반민족국가행위로 전원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남편과 사돈 관계인 여성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시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간첩행위로 인정되어 2015년에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 이외에도 2015년 12월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동네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

마. 수용자 인권 실상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은 ‘일하는 재미’에 비유될 정도로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다. 초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용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열악하여 수용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인 가족권

침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 형제라도 함께 살 수 없으며 부부조차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고 결혼과 출산이 금지되며 부부관계를 못하도록 밤과 낮에 서로 번갈아가며 일을 시킨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2015~2016년경 이후부터는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의 인권 실상에 관한 증언들이 수집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치범수용소 인권실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다른 방향의 증언도 수집되었다. 특히 함경북도 북창군에 소재했던 18호 관리소(2006~2007년 개천으로 이전)의 경우 기존 정치범수용소 인권실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부모와 함께 완전통제구역에 있다가 2019년 탈북하여 2020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명의 증언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이들은 관리소에서 출생하였는데 이는 정치범수용소에 서는 결혼과 출산이 금지된다는 일반적인 이해와 차이가 있다. 또한 관리소에 있었을 때 관리소를 지키는 직원(안전원)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관리소 내 독립적인 사법체계가 갖춰져 있었고 재판소, 노동교양대, 노동단련대 등도 존재한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이 증언은 18호 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 전체의 실태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림 Ⅱ-4〉 북한 주민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말살

고문



신체에 대한 구타



공개처형



고정자세 강요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강제노동



III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실태



III.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실태

1. 북한 구금시설 종류

가. 집결소

집결소는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 계류자, 강제송환 탈북자 등을 조사하고 수용하는 곳이다. 집결소 측에서 수용자의 거주지 담당 보안서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 안전원이 집결소에 도착하면 수용자는 거주지로 이송된다. 사회안전성 관할의 집결소가 전국적으로 있으며, 국경지역에는 국가보위성 관할의 집결소가 있다. 국경지역에 있는 국가보위성 관할의 집결소는 중국행 및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자, 즉 비법월경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협소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2017년 수감 당시 국가보위성 관할의 청진 집결소는 2평 남짓한 공간에 30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나. 구류장

구류장은 범죄혐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곳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보위기관(국가보위성)의 수사원과 예심원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수사, 예심¹⁹⁾하고 사회안전기관(사회안전성)의 수사원과 예심원은 일반범죄사건을 수사, 예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이를 볼 때 북한 구류장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혐의자를 조사하는 국가보위성 구류장과 일반범죄사건 혐의자를 조사하는 사회안전성 구류장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위성 조직은 중앙, 도,

19) 북한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시·군 단위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단위별로 구류장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안전성 조직은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군, 기관·기업소 단위로 구분된다(인민보안법 제8조, 제9조). 각각의 단위별로 구류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구류장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혐의자를 조사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일반범죄사건을 다루는 사회안전성 산하의 구류장에 비해 인권침해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류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아시아방송은 2021년 12월 함경북도의 한 사법 관련 소식통을 인용하여 2021년 12월 초에 내려온 사법당국의 지시에 따라 2022년부터 구류장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피구류자들을 더욱 엄격하게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²⁰⁾

다. 노동단련대와 노동교양대

재판소에서 형벌로서 노동단련형(6개월 이상 1년 이하)을 선고받는 범죄자는 노동단련대에 보내진다. 노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형법 제39조).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은 자는 사회안전성 관할의 노동단련대에 수용된다. 강원도 원산시 노동단련대, 평안남도 증산군 노동단련대가 사회안전성 관할의 노동단련대라는 증언이 있다.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고 개천교화소 내 노동단련대에 수용되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천교화소 내에도 사회안전성 관할의 노동단련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대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동단련대를 운영한다고 한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 종류의 하나로 노동교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2020.12.18. 개정)은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북한 주민은 ‘노동교양대’에 보내어져 노동교양처벌(5일 이상 6개월 이하)을

20) “북, 구류장 수용규정 개정해 구류 요건 강화,” 『자유아시아방송』, 2021.12.24.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행정처벌법 제18조). 노동교양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회안전기관 등 다양하다(행정처벌법 제345조~제349조). 인민보안단속법도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가 노동교양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7조).

노동교양대를 구분해서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이 있었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양강도 보천군 노동교양대 경험이 있었는데 재판 없이 6개월 처분을 받아 교양대에 출퇴근을 하며 별목일과 부역일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교양대가 아닌) 단련대에 갔다고 증언하였다. 한 예로 2016년 11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보안서 사람들과 정치위원에게 노동교양 6개월을 받아 양강도 혜산시 노동단련대에 수용되어 중등학교 건설현장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노동을 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북한 형법과 행정처벌법이 노동단련대와 노동교양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되는 시설로 판단된다. 노동교양처벌은 2011년 신설되었다.²¹⁾ 2011년 행정처벌법에는 노동교양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²²⁾ 이 같은 점들을 미루어볼 때 노동교양처벌과 노동교양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노동단련대와 노동교양대를 혼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의 강도는 노동단련대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단련형은 형벌인데 비해 노동교양처벌은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행정법적 제재이기 때문이다.²³⁾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양대와 단련대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에 있어 노동의 강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21) 2011.10.16. 북한 「행정처벌법」 제14조.

22) 2011.10.16. 북한 「행정처벌법」 제17조: 노동교양처벌은 노동단련형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행정법적 제재이다.

23) 현행 행정처벌법은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종전 행정처벌법은 이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2011.10.16. 북한 「행정처벌법」 제13조).

판단된다. 통일연구원의 기존 조사 결과 노동교양대에 대한 증언은 많지 않았다. 노동교양대 운영 주체, 노동교양처별의 강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라. 노동교화소

교화소는 국무위원회 직속의 사회안전성 교화국에서 관할하는 교정 시설로, 재판소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노동교화형은 무기와 유기로 구분되는데 유기노동교화형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노동교화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권리 일부가 정지된다(북한 형법 제38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 2015년 당시 북한에는 총 19개의 교화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북한 교화소 운영에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데일리NK는 원산교화소의 2012년과 2022년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교화소가 구류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시설 전환의 이유는 교화소 인근에 대규모 단지가 생기고 외부 노동출과 주변 이목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⁴⁾ 자유아시아방송은 2022년 9월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안북도 피현군 선화동에 있던 교화소가 철거되었고 수감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다고 보도하였다.²⁵⁾

24) “[하늘에서 본 북한] 원산 88호 교화소, 노동단련대→구류시설로 변경 추정,” 『데일리NK』, 2022.11.29.

25) “[좁힌 북한] 강제 노동 북 교화소 발각 직후 철거돼,” 『자유아시아방송』, 2022.10.31.

〈그림 III-1〉 원산교화소 시설 변화 모습²⁶⁾



〈그림 III-2〉 평안북도 피현군 선화동교화소 시설 변화 모습²⁷⁾



26) "[하늘에서 본 북녘] 원산 88호 교화소, 노동단련대→구류시설로 변경 추정," 『데일리NK』, 2022.11.29. (사진=데일리NK)

27) "[좁은 북한] 강제 노역 북 교화소 발각 직후 철거돼," 『자유아시아방송』, 2022.10.31. (사진=자유아시아방송)

2. 고문 및 가혹행위

신체에 대한 구타, 고정자세 강요 등의 가혹행위 발생은 김정은 시대에 지속되었다. 2015년 2월 인신매매 혐의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조사 과정에서 구타를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몽둥이로 맞아 온몸이 멍이 들고 살이 다 썩어나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2016년 5월 양강도 삼지연시 보위부 집결소에서 8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북한이탈주민은 한국행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자신의 아버지는 폭행을 당한 정도가 훨씬 심해 치아가 다 나가고 눈이 터질 정도였다고 한다. 2016년 함흥교화소 수감 시 작업반에서 눈초리 작업 계획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각자로 종아리를 구타당한 사례와 2017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고 조금만 움직여도 못이 달려있는 각목으로 구타를 당해 허리와 등에 심한 상처가 난 사례도 수집되었다. 2018년 양강도 보위부 집결소 수감 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고정자세를 강요받고 간지러운 곳을 긁는 정도의 움직임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 2019년 4월 구류장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은 구류장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 죄수와 같은 대우를 받고 고정자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고정자세 유지가 너무 힘들어 움직이면 계호원이 머리를 잡아 벽에 박으며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2015년 보위부 구류장 수감 시 70살이 넘는 노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앉았다 일어나기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남성 수감자는 여성 수감자에 비해 더 많이 구타를 당한다고 한다.

보안원이 직접 구타하지 않고 수감자에게 대신 구타하게 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보위지도원들이 더럽다고 수감자에게 손대지 않고 같이 수감된 감방 반장에게 때리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수감자에게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자해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강제노동

집결소에서 과도한 노동과 강제노동이 지속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집결소에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보다 더 오래 수감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2015년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집결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하루 평균 15~16시간 정도의 보도블록 생산 작업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7년 8월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농포 집결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집결소 내 시멘트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함경북도 청진도 집결소에 수감되었던 증언자는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농사일, 건설장일, 축사일 등을 하였다고 한다.

단련대에서의 강제노동 사례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단련대 1개월형을 받고 2013년 대흥단군 흥단수라는 강에서 돌로 강둑쌓기 노동을 했는데 매우 힘들었다는 증언하며,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평양 용성구역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구호를 외치며 아파트 짓는 일을 하는 단련대생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8월 삼지연시 보안서에서 노동단련대 1개월 처분을 받아 건물 도배, 보안서 건물 담장 쌓기, 삼지연시 경기장 땅 다지기, 김매기 등의 노동을 하였는데 단련대 안에서 숙식하고 외부 일을 나갈 때는 감독관이 동행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회령시 단련대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회령시 임산작업소에서 나무를 채벌하여 비게 된 땅을 개간하였다고 한다.

4.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상황과 사망자 발생

열악한 위생환경 및 영양상태로 인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교화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2010년 겨울 전거리교화소 내 열병 발생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함흥교화소에서도 감염병 발생으로 다수 사망한 사례가 2014년 조사로 확인되었다.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2008년에 비해 2015년의 교화소 영양·위생·의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옥수수와 콩 한 덩어리 정도가 식사로 나왔기 때문에 가족이 면회식을 넣어 주어야 버틸 수 있었는데 면회를 오지 않은 수형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함흥교화소 복역 중 질병으로 사망한 수형자 2명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수형자 2명은 자궁암, 척추결핵을 앓았는데 교화소에서 진료를 봐주지 않아 사망하였다고 한다.

노동단련대의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8월 양강도 삼지연시 노동단련대 수용 경험이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단련대에서 세 끼 식사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삶은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전부였기 때문에 버티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2015년 3월부터 2개월간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에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도 강냉이밥, 장국, 염장시래기국 등이 식사로 제공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집결소의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열악하다. 2014년 4월부터 한 달간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에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식사로 통강냉이가 제공되었으며, 고열로 힘든 상태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 했다고 증언하였다. 2014년 혜산시 집결소에 구금되었던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식사로 제공되었는데 양이 많지 않아 수감자 모두 배고파했다고 증언하였다.

구류장의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15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수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식사로 누룽지, 김치, 콩나물이 제공되었으며 숟가락을 주지 않아 비닐로 숟가락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2018~2019년에 구류장에 수감되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식사로 한 줌 정도의 옥수수를 소금과 함께 받았는데 식사수준은 개도 안 먹을 정도라고 증언하였다.

구금시설 내 감염병 및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사체는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불망산’이라고 불리는 인근의 산에서 화장 또는 매장 처리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어머니가 교화 13년형을 받고 복역 중 2014년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교화소에서 처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예외적으로 단련대의 경우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고 사체를 인도한 사례도 조사되었다.

5. 강제송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제낙태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었는데 주로 집결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알몸수색 및 자궁검사도 이루어졌다. 한 여성은 2017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 도착하자마자 구타와 동시에 옷을 벗기고 강제수색을 당하였다. 여자 2명이 옷을 벗기고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자궁과 항문검사를 하였다. 신체수색을 해도 물건이 나오지 않자 앉았다 일어서기(일명 뽀뽀질)를 반복시켰다. 중국에서 송환될 때 가지고 온 동복 내의와 위생대까지 빼앗았다고 한다. 2017년 강제북송된 다른 여성은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여성보위원이 자궁검사를 했는데 같은 공간에 남성도 있었다고 한다.

구금시설 내 성폭력 사례도 조사되었다. 한 여성은 2016년 사회안전성 집결소에서 군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는데 피해 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2014년에 교화소 근처에 있는 계호원 집에 일을 해주러 불러 갔었는데 그 집에 있는 계호원이 함께 간 동료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사례도 수집되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의 사례를 드러내기 주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금시설에서의 성폭력 사례는 더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구금시설 내 강제송환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낙태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었다.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청평 집결소에 있었다는 북한이탈여성은 동료수감자가 임신 3개월 상태에서 강제로 소파수술(임신중절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출혈이 계속되었고 결국 자궁에 합병증이 와서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른 사례로 2016년 12월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에 한 달간 있었다는 북한이탈여성은 동료수용자가 임신 4개월 상태에서 강제낙태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 여성은 소파수술 후 바로 집결소로 돌아와 나무하는 작업에 동원되어 매우 힘들어 하였다고 한다.

6. 인권유린 금지 방침 하달 및 실태 변화 증언

김정은 집권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 활동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COI는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도에 반한 죄 위반자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²⁸⁾ 이후 유엔은 지속적으로 책임규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이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침해를 한 북한의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특히 책임규명에 대해 국권(國權)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자주권과 연계하여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제도 전복 시도, 북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반발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2019년 11월 20일에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9개의 짧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제3조를 보면(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목되는 것은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비우호적인 행위의 첫 번째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응조치의 내용은 미국, 유럽연합, 영국의 인권제재 법제에서 볼 수 있는 여행 금지, 자산동결 등의 경제제재에서 더 나아가 경제교류·문화교류 단절, 심지어는 외교관계의 단절까지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대응조치법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와 인권제재를 제재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의 인권제재보다 대응 수위가 높다. 북한이 대응조치법을 적용하여 취한 구체적인 조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대응조치법 제정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책임규명, 인권제재에 대한 수사(修辭)적 대응에서 더 나아가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²⁹⁾ 또한 북한은 2015년 이후 형법 개정을 통해서도 공화국 존엄모독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제64조)을

28)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87;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para. 1218.

29) 이규창,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06(2023. 2.22.), p. 2.

신설하였다.³⁰⁾

반면에 북한은 2013년 이후 인권유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침을 지속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1>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정은 집권 이후 하달된 인권유린 금지 방침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1> 김정은 집권 이후 하달된 인권유린 금지 방침³¹⁾

시기	장소	내용
2013	삼지연시 보안서	구금시설에서 때리거나 인권유린 하지 말라
	전거리 교화소	교화인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내보내라
	원산시 보위부	죄인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줘라
2014	양강도 보위부	심문시 고문을 금지하라
	인민보안성 (현 사회안전성)	인권침해는 인민대중과 수령을 갈라놓는 이적행위이다. 적발되면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로 처벌하겠다.
2015	중앙당	국가보위성은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2017	양강도 보위부	죄인들의 인권도 보장하라
	양강도 보위부	구금시설에서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전거리 교화소	교화소에서 사망·허약자를 없애라. 과업이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도 처벌하지 말고 구타를 하지 말라. 몰아주기(왕따)를 없애라
2018	혜산시 여맹강연회	호상간에 인권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고 감정을 해치지 말라. 우리나라(북한)는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미확인	보위부에서 사람을 때리지 말라
	미확인	보안서나 보위부에서 조사받는 사람들을 폭행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리지 말라
	대흥단군 보위부	죄인을 때리지 말라

30) 북한은 2015년 7월 22일 이후 형법을 9차례 개정하였는데 어느 시점에 공화국 존엄모독죄가 신설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31)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

북한이탈주민들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 때문에 인권유린을 하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증언하였다. 2013년 보안서 예심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은 예심원이 법무해설집을 보여주었는데 김정은이 ‘법 정치’를 하겠다며 구금시설에서 때리거나 인권유린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2017년 보위부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계호원이 “세계에서 인권을 가지고 떠들기에 법이 좋아져 복인줄 알라. 작년까지는 말을 듣지 않으면 벌주고 때렸는데 이제는 손 하나 안건든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구금시설 내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을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등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혜산시 구류장에서 “인권유린으로 북한이 타격받았을 때라”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노동단련대에서 구타나 폭행을 하지 말라는 김정은 방침이 있었다고 들었으며, 실제 보안원들의 구타가 감소하거나 없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2018년과 2019년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삼지연 노동단련대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에는 단련대에 없었던 “인권유린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2016년에는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2019년 4월 구류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재판 전 구류장에 수감된 사람은 ‘형 대기 중인 사람’으로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보위성 산하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북한이탈주민도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구금시설 내 사망자가 감소하였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해당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평안남도 개천교화소 수감 시 월 평균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가족면회를 많이 허용하는 등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

로 인해 사망자가 감소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21년 11월 30일에는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구금시설에서의 구타 관련 규정이 주목된다. 구타행위방지법은 사회안전기관(사회안전성)을 비롯한 법기관이 구타행위를 단속하지 않거나 신고를 받고도 조사처리를 바로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직무집행과정에서 구타행위를 한 경우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앞에서 살펴본 인권유린 금지 방침과 실태 변화 증언을 고려할 때 북한 구금·교정시설에서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실태 개선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하여 북한 실태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사회통제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실태가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량난 악화로 교화소 배식이 열악해지면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에 개천교화소를 포함한 3곳의 교화소 수감자 700여 명이 아사하거나 병사했으며, 수감자들이 식량 획득 목적으로 집단 탈옥하여 강도·절도와 살인을 저질러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³²⁾

32) “北교화소서 굶주림에 집단탈옥…2년간 수감자 700명 아사·병사,” 『연합뉴스』, 2023.2.22.

IV

코로나19 이후 통제 강화에 따른 인권침해



IV. 코로나19 이후 통제 강화에 따른 인권침해

북한은 형법, 형사소송법, 판결판정집행법, 검찰감시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인민보안법 등의 법규를 통해 사회통제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법규들의 집행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피구금자의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형법과 행정처벌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형법과 행정처벌법을 통한 사회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09년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형을 추가하여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위반자에게 적용하였다. 2015년에는 탈북 통제의 일환으로 ‘비법국제통신죄’를 신설하였다. 2015년 형법(2015.7.22. 개정)이 241개 처벌 조문을 두고 있던 것에 비해 2022년 형법(2022.5.17. 개정)은 269개의 처벌 조문을 두고 있다. 행정처벌법의 경우 2008년 5월 20일 174개 처벌 조항이 2011년 10월 16일 195개 조항, 2016년 12월 22일 296개 조항, 2020년 12월 18일 307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사회통제가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사상·정보·문화 통제 강화,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통치 강화,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 및 처벌 강화 등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정책의 여파로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하여³³⁾ 구체적인 실

33) 2019년 1,047명이었던 입국인원이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

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단속과 재판, 처벌 과정에서 공개재판,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와 같은 북한 주민의 사법적 권리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나 더 악화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염병예방법 개정(2020.8.22.)과 비상방역법 제정(2020.8.22.)을 통해 비상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봉쇄·제한·차단, 격리 조치를 실시하였다.

〈표 IV-1〉 북한의 비상방역 등급³⁴⁾

등급	상황
1급	악성전염병이 북한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국경통행과 동식물, 물자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북한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발생지역에 대한 인원, 동식물, 물자이동을 제한하면서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특급	악성전염병이 북한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국경을 봉쇄하거나 북한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초특급	주변 나라나 지역에서 발생한 악성전염병이 북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집체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하거나 북한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과 인접지역을 완전봉쇄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보다 강도 높은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 주민들이 방역 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법규는 일반적으로 개별 법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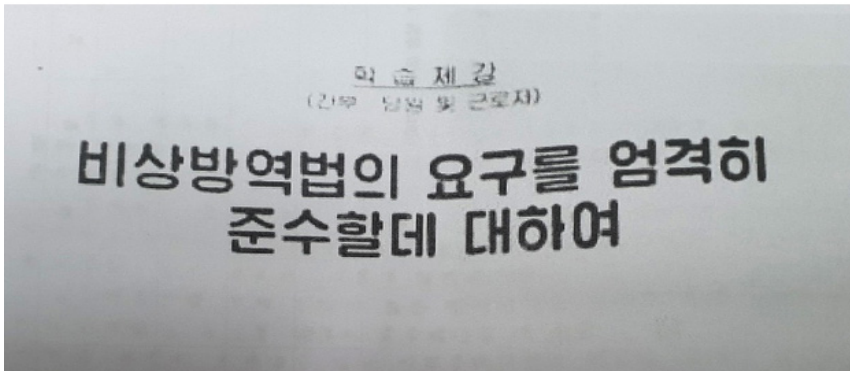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23.2.23.).

34) 북한 「비상방역법」 제3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행정적 책임은 행정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은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례적으로 북한 비상방역법은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별도의 장(제5장)으로 편제하고 13개의 처벌조문(제63조~제75조)을 두고 있다. 벌금 규정도 두고 있다(제63조, 제64조). 2021년 9월 양강도에서는 학습회를 개최하여 비상방역법 규정을 설명하였는데 참가한 주민들이 벌금액에 충격을 먹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다.³⁵⁾

〈그림 IV-1〉

‘비상방역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할데 대하여’ 학습자료 표지 사진³⁶⁾



비상방역법은 북한 주민이 방역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2020년 비상방역법 제정 당시 2개 조문에서 2021년 개정(2021.10.19.) 시에는 3개 조문으로 증가하였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비상 상황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자유권규약 제4조

35) “북, 코로나 방역위반 행위에 턱없이 높은 벌금,” 『자유아시아방송』, 2021.9.29.

36) 위의 기사. (사진=자유아시아방송)

제1항). 이 같은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북한 당국이 방역조치 위반을 이유로 주민에게 사형까지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로 생명권에 반한다.

〈표 IV-2〉 북한 비상방역법의 사형 조문

제정 비상방역법(2020.8.22.)		개정 비상방역법(2021.10.19.)	
비상방역사업 관련한 명령·정령·결정·지시 집행태만죄(제65조)	극히 엄중할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비상방역사업 관련한 명령·정령·결정·지시 집행태만죄(제69조)	극히 엄중할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국경·지상·해상·공중 봉쇄태만죄(제68조)	극히 엄중한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국경·지상·해상·공중 봉쇄태만죄(제72조)	
		비상방역사업방해죄(제73조)	

〈그림 IV-2〉 방역규정 절대준수를 강조하는 북한 포스터³⁷⁾



37) 『조선중앙통신』, 2022.5.23. (사진=연합뉴스)

2. 사상·정보·문화통제 강화³⁸⁾

국제사회는 북한 내 정보유입·문화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7월 「2017년 북한인권 재승인법」³⁹⁾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효력을 연장하면서 대북방송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다(Sec.4). 그리고 정보 전달 매체로 USB, 소형 SD 카드, 오디오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어, 핸드폰,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인터넷, 무선 통신, 기타 전자 형태의 미디어를 추가하였다(Sec.5). 2022년 12월 23일에는 「북한 검열 및 감시에 대응하는 2021년 오토 웹비어 법」⁴⁰⁾을 제정하였다. 웹비어법은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검열에 연루되었거나 책임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자산동결, 비자 무효화 등의 제재 부과(Sec.5), 북한 내 정보자유 증진 및 검열·감시에 대한 대응(Sec.7)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 의회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는 이례적으로 2021년 4월 16일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대북전단금지 문제를 다루었다. 미 국무부는 2021년 각 국가별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표현의 자유 제한 항목에서 2020년 12월 29일 이루어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사실과 동 법률 시행 이후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 진행을 기술하였다.⁴¹⁾ 키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021년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전단살포 금지와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를 권고하였다.⁴²⁾

38) 이규창,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pp. 3~4를 보완하였다.

39)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7.

40) 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n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of 2021.

41) 2021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Republic of Korea, pp. 7~8.

42) UN Doc. A/HRC/46/51 (2 July 2021), para. 41.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북한사회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 증진과 정보접근권 증진 차원에서 북한 내 정보유입·문화유입을 강조·강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북한은 정보통제·문화통제 관련 법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그 일환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12.), 청년교양보장법(2021. 9.29.)을 제정하였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경우에는 한국 영화·녹화물을 유입·유포하거나 시청·열람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IV-3〉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의 사형 규정⁴³⁾

위반 행위		처벌
제27조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	사형
제28조	많은 양의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유포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제29조	많은 양의 성녹화물 또는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유입·유포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	사형

2022년 9월 14일~15일에는 5년 만에 전국법무일군⁴⁴⁾대회를 개최하면서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을 소집 목적으로 제시하였다.⁴⁵⁾ 이 대회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쓸어버리는 법적 투쟁을 강도 높게’ 벌였다고 평가하였다. 2022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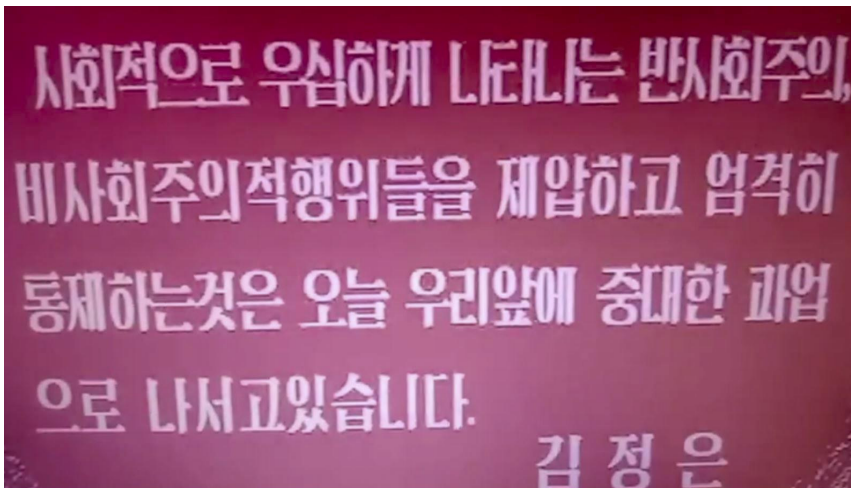
43) 한명섭,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제27호 (2022), pp. 117~118을 재구성.

44) 법무일군은 검찰소, 재판소 등의 기관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와 실무자들을 말한다. 북한에서 전국법무일군대회가 개최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45) 『조선중앙통신』, 2022.9.16.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상’을 강조하였다(12번 언급).⁴⁶⁾ 2023년 1월 17일~1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우리의(북한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⁴⁷⁾ 이 회의에서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을 논의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국가사업전반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제기되는) 실천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⁴⁸⁾ 〈그림 IV-3〉은 북한이 2022년 상반기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에서 온갖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 높히 벌려나가자’라는 제목의 영상에 나오는 내용 일부이다. 이 영상에서 김정은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북한 주민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그림 IV-3〉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독려하는 김정은 지시⁴⁹⁾



46) 『조선중앙통신』, 2023.1.1.

47) 『조선중앙통신』, 2023.1.19.

48) 위의 기사.

49) “평양서 한류 소탕전… 2중 3중 야간순찰, 한 구역서 1000명 자백,” 『조선일보』, 2022.12.26. (사진=조선일보)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제·문화통제를 강화하는 기저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10대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은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하였다.⁵⁰⁾ 이에 앞서 북한 노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2013년 6월 19일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으로 개정하였다. 북한은 노동당규약과 10대 원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유지·계승을 위해 주민들의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주민의 인권은 2021년 4월 30일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으로 지속 내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명사적사업법은 유일영도체계 수립을 혁명사적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조). 특히, 혁명사적사업법은 혁명역사와 혁명업적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김정은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⁵¹⁾ 북한 법규에서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김정은이 명시된 것은 혁명사적사업법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이는 향후 김정은으로 상징되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해 사상·정보·문화통제가 지속·강화될 것임을 전망케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생했던 종교활동, 반체제 삐라 살포·유통, 녹화물 시청·유포를 사유로 하는 공개처형과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사법적 권리 침해, 정치범수용소 수용 등이 인권침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50) 2019년 8월 29일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51) 북한 「혁명사적사업법」 제2조: 혁명사적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와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

〈표 IV-4〉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 10대 원칙 핵심 내용

제1원칙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2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제3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 옹위하여야 한다.
제4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제5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 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원칙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 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제7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제8원칙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제9원칙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전국·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제10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하 여야 한다.

3.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 강화

코로나19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 발생을 부인하다가 2022년 4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10일 기준으로 74명이 사망하였다.⁵²⁾ 그런데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체제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 국가 존립과 관련한 문제로 인식하여 대응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 당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로부터 알 수 있다. 북한은 2020년 1월 28일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어 2020년 1월 29일 노동신문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 7월 26일에는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대응 수준을 격상하였다. 북한이 이와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립과 관련한 문제로 대응한 이면에는 이동제한과 격리 조치, 이로 인한 장마당과 경제 활동 제한, 식량 사정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주민 불만과 체제 불안정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언론매체와 김정은 발언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엄중성과 위기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데서 나타난다.⁵³⁾ 대표적으로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대중의 방역위기위식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효성 있게… 통제를 시종일관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⁵⁴⁾ 특히, 관리들을 대상으로는 유일영도체계 실현

52) 통일연구원, “북한 코로나19 현황,” <<https://kinu.or.kr/cms/content/view/938>> (검색일: 2023.2.23.).

53) 김호홍·박보라,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한 북한의 체제 강화 동향』, (서울: 국가안전전략연구원, 2022), pp. 10~12.

54) 『노동신문』, 2021.5.3.

을 강조하며 처벌과 인사조치를 통한 기강 잡기에 주력하였다.⁵⁵⁾ 대표적으로 김정은은 2021년 6월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태만)히 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킨 일부 책임 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를 지적하고 인사교체를 단행하였다.⁵⁶⁾ 유럽연합은 2021년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국경봉쇄와 여행제한 조치로 주민들의 시장 활동 및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가 권위를 강화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⁵⁷⁾ 휴먼라이츠워치는 2023년 월드리포트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인권을 탄압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⁵⁸⁾

4.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와 처벌 강화⁵⁹⁾

북한은 2013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아편재배 및 마약제조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최고형으로 추가하였다. 2015년 형법은 4개 조문에서 마약범죄를 규정하고, 이 가운데 2개 죄목에 대해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022년 형법 개정을 통해 마약범죄 죄목을 8개 조문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3개 죄목에 대해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5) 김호홍·박보라,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한 북한의 체제 강화 동향』, pp. 12~15.

56) 『노동신문』, 2021.6.30

57) EU, *EU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2021 COUNTRY UPDATES* (2021). p. 198. ... The measures appeared also to be part of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State by further restrict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ability to engage in the unofficial market transactions on which much of the population depends for its livelihood.

58) Human Rights Watch, "북한: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인권을 탄압하다," 2023.1.12., <<https://www.hrw.org/ko/news/2023/01/12/north-korea-covid-19-used-crush-rights>> (검색일: 2023.2.23.).

59) 이규창,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pp. 5~6 수정·보완.

〈표 IV-5〉 북한 형법의 마약범죄 규정 비교

2015. 7. 22. 형법	2022. 5. 17. 형법
제130조(마약·독약·폭발물의 보관·공급 질서 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1조(마약분실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2조(마약비법공급죄) 대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공급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6조(마약비법보관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06조(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제233조(아편꽃 비법재배죄) 많은 양의 아편꽃을 비법적으로 재배한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4조(아편비법채취죄) 극히 많은 양의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제235조(마약비법제조죄) 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제207조(비법마약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8조(마약비법사용죄)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08조(마약 밀수, 거래죄)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제237조(마약밀수, 거래죄) 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형법적 대응에서 더 나아가 북한은 2021년 7월 1일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마약 관련 금지사항(제11조~제16조), 마약범죄에 대한 신고(제17조), 학생 대상의 마약범죄방지 관련 교육 실시도 규정하고 있다(제9조). 마약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20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제20조~제39조). 그 가운데 4개 죄목에 대해 사형을 선

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9조). 북한이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마약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마약범죄를 “... 사람들을 정신육체적으로 변질타락시키고 국가사회제도의 정치적 안정을 파괴하는 극히 엄중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마약범죄방지법 제2조). 이는 북한이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체제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형법 외에 개별 법규에서 형사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최근 북한법제 변화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약범죄방지법 외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비상방역법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에 대한 대응, 비상방역에 대응 못지 않게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체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북한이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마약 관련 공개 처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할 때 중대한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정치범수용소 수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약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사법적 권리 침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V

결론



V. 결론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개재판, 공개처형은 대표적인 북한 인권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북한 주민들의 재판절차 없는 정치범수용소 수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인권침해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수용자들은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에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노동교화소 등 여러 형태의 구금·교정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재판 이전 형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또한 재판 이후 형벌 집행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구금·교정시설에서의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강제송환 여성에 대한 구금시설 내에서의 폭력과 강제낙태, 영아살해도 자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는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었다.

2013년 COI 설립 결의와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당국은 인권유린을 하지 말라는 방침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하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개처형이 감소하였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들이 수집되었고, 구금시설에도 고문·가혹행위·강제노동 및 사망자가 감소하였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2021년에는 구타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실태와 관련하여서는 함경북도 북창군에 소재했던 18호 관리소 내에서 결혼과 출산, 교육이 허용되었고 관리소 내에 독립적인 사법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이탈 주민의 증언만으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실태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통제 강화의 여파로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하여 북한 실태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사상·정보·문화통제 강화,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 강화,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와 처벌 강화 등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형사재판 과정과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실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교화소·정치범수용소 시설 확충, 코로나19 이후 인도적 상황 악화에 따른 구금시설 내 병사자·아사자 발생 소식이 이미 전해지고 있다.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 상황과 운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